

안전성 증명 신청서
(결과통지서 겸용)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		팩스번호	
인증대상	안전기준상의 어린이제품명		

신청 내용							
품목분류번호 (HS)	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	제 조 자 제 시 모델명	수량 (단위)	제 조 자		검 사 회 망 일	검 사 회 망 장 소
				제 조 국 가	제 조 업 체 명		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
이 안전성 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안전인증기관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검사 결과			
판정			
품목검사번호			
판정 사유 (합격 시에는 적지 않습니다)	[]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		
	[] 제품검사기준에 부적합	항목	
		기준	
		결과	
비고			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통지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안전인증기관장

직인

첨부서류	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. 제품의 설명서(사진을 포함합니다) 1부 3.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4.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5.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」 제48조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	---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